

4 교장 임기제

가. 교장 임기제

1) 관련 규정

가) 교장 등의 임용(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)

- (1) 교장·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.
- (2) 교장·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- (3) 교장·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·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(4)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장·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교장·원장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- (5) 교장·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,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.
- (6)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·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(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)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.
- (7)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.
- (8)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·원장을 제외한 교장·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 될 수 있으며, 교장·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.
- (9) 제4항에 따른 교장·원장의 재임용과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나) 교장 등의 임용(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)

- (1) 교장이나 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장이나 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.
- (2)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.
- (3)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장·원장 및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다) 원로교사의 우대 등(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6)

- (1)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6항에서 “원로교사”란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.
- (2) (1)에 따른 원로교사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의 경감, 당직 근무의 면제,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, 그 밖에 교내·원내의 각종 행사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.